

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10일

양 구 군

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사업(대지위치)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187번지
3. 도로위치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187(1필지)
4. 도로길이 : 40.05m
5. 도 로 폭 : 4m
6. 도로면적 : 37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	소유자	비고
			공부면적(㎡)	길이(m)	너비(m)	면적(㎡)		
양구군 양구읍 월명리	187	전	1000	40.5	4	37	김*제	도로지정동의
	1필			40.5		37		